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. 5. 18 선고 2016가단873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7. 4. 27

판결 선고 2017. 5. 18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대 223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33㎡ 지상건물을 철거하고, 위 대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03.

4. 28. 포항시 남구 C 대 223㎡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33㎡에는 미등기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이 있는데, 피고가 위 건물에서 거주하며 사실상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위 건물의 대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1983년 무렵부터 외할머니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도 같이 거주하였으므로, 위 1983년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무렵에 피고 측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의 외할머니를 포함한 피고 측이 1983년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동휘

별지